제2601호
2018. 10. 10.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 집 인 :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8-105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2
제2018-106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 공 고

제2018-697호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4
제2018-698호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중구

.

고 시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10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부여기준
신당동 288-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4길 19	2018.10.10.	청구로4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1.03.02.	청구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필동2가 134-4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20	2018.10.10.	필동로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필동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을지로4가 180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40-9	2018.10.10.	창경궁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조선5대 궁궐의 하나인 창경궁 명칭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106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 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4길 19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8-24	2018.10.10.	건물말소
2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34-4	2018.10.10.	건물철거
3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4길 15-6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8-17	2018.10.10.	건물말소
4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4길 15-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8-26	2018.10.10.	건물말소
5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8길 5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7-12	2018.10.10.	건물말소
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0길 10-5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7-12	2018.10.10.	건물말소
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0길 10-7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7-13	2018.10.10.	건물말소
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40-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180	2018.10.10.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 고

◉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8-697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2017.12.26. 공포, 2018. 1.1. 시행) 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 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업무 및 권한 등을 정함(안 제3조~제6조)
다.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 처리기간 등을 정함(안 제7조~제15조)
라. 권리보호요청 신청, 대상,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9조)
마. 기타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3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예관동) 전화 : 02-3396-5102, FAX : 02-3396-8695, E-mail : chaewo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을 감사담당관에 둔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이상 있는 자.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관련 업무
2.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법 제147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안건
2.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민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감사원법」 및「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3.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포함하되, 공휴일 ·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회부 대상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30일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률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구청장에게 위원회 상정 요구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1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10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4조(불이익변경금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구청장이 당초 처분 시 누락된 부분 등을 발견한 경우 등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불복대상에서의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①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

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률자문,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에 따라 접수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다.

제2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8-69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2017. 12.26. 공포, 2018. 1.1. 시행) 됨에 따라 제정되는「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고충민원의 신청, 처리기간 연장, 결과 통지 등을 정함 (안 제3조~제8조)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 및 통보 등을 정함 (안 제9조~제14조)

라.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처리기간 연장, 처리절차 등을 정함 (안 제15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3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예관동) 전화 : 02-3396-5102, FAX : 02-3396-8695, E-mail : chaewo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른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기간 연장신청)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전까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11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제9조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4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조례 제16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 단서에 따라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9식에 따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7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이후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민 원 내 용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제2601호 46-19 2018. 10. 10.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예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제2601호 46-20 2018. 10. 10.

.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충내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제2601호 46-21 2018. 10. 10.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 약)				
00과 의 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제2601호 46-22 2018. 10. 10.

.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 ·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충내용				
요구자료				

끝.

발 신 명 의

제2601호 46-23 2018. 10. 10.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제2601호 46-24 2018. 10. 10.

.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제2601호 46-25 2018. 10. 10.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제2601호 46-26 2018. 10. 10.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리결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납세자 (세무조사의 기간연장을 받으려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연기신청 사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세무조사 기간연장을 받으려는 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제2601호 46-28 2018. 10. 10.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제2601호 46-29 2018. 10. 10.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 신 명 의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제2601호 46-32 2018. 10. 10.

.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통지**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수사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제2601호 46-33 2018. 10. 10.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발 신 명 의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요청사유	처리여부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결과	결과통지일	처리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제2601호 46-38 2018. 10. 10.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기간연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제2601호 46-39 2018. 10. 10.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제2601호 46-40 2018. 10. 10.

.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제2601호 46-41 2018. 10. 10.

.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제2601호 46-42 2018. 10. 10.

.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제2601호 46-44 2018. 10. 10.

.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 화 번 호 (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제2601호 46-45 2018. 10. 10.

.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제2601호 46-46 2018. 10. 10.

.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4항(제5항)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연도	
조 사 반			조 사 유 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